

양천구고시 제2023-134호

도시관리계획(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사항의 변경)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-34호(1994.02.15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96호(2015.12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39호(2020.06.1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3-408호(2023.09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-2920호(2023.10.19.)로 결정(변경)된 「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사항의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16일
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기존 국공유지(사회복지시설·도로)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편입을 결정(경미한 사항의 변경)하는 사항임

I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적(㎡)		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①	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	양천구 목동, 신정동 일원	4,368,463.0	증)2,634.4	4,371,097.4	최초결정일 (1994.2.15.)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34호

※ 1) ①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금회 폐지되는 '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(714,871.4㎡)'을 "중심지역", 14개의 공동주택(아파트)및 그 외 지역을 '주거지역 및 기타지역'으로 통칭하며, 구체적 위치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참조

▶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면적(㎡)			변경 사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①	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	4,368,463.0	증)2,634.4	4,371,097.4	기존 국공유지(사회복지시설·도로)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

②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4,368,463.0	-	4,371,097.4	100.0	
주거지역	소계	3,168,887.9	-	3,168,887.9	72.5	
	제1종일반주거지역	261,190.4	-	261,190.4	6.0	
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237,766.1	-	237,766.1	5.4	
	제2종일반주거지역	606,609.2	-	606,609.2	13.9	
	제3종일반주거지역	2,063,322.2	증)2,634.4	2,065,956.6	47.2	
중심지역	소계	568,384.8	-	568,384.8	13.0	
	일반상업지역	568,384.8	-	568,384.8	13.0	
공업지역	소계	73,561.2	-	73,561.2	1.7	
	준공업지역	73,561.2	-	73,561.2	1.7	
녹지지역	소계	557,629.1	-	557,629.1	12.8	
	자연녹지지역	557,629.1	-	557,629.1	12.8	

2.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3. 도시계획시설에 결정(변경)조서

가. 교통시설 : 변경없음

나. 공간시설 : 변경없음

다. 유통 및 공급 시설 : 변경없음

라. 공공문화체육시설

1) 운동장 : 변경없음

2) 체육시설 : 변경없음

3) 공공청사 : 변경없음

4) 문화시설 : 변경없음

5) 학교 : 변경없음

6) 사회복지시설

■ 사회복지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①	어린이집(3단지)	사회복지시설	목동903-3	1,012.4	-	1,012.4	서고시 422호 (94.12.27)	
기정	②	어린이집(10단지)	사회복지시설	신정동310-11	718.3	-	718.3	"	
기정	③	노인종합복지관 (11단지)	사회복지시설	신정동325-3	2,141.7	-	2,141.7	"	
기정	④	어린이집(14단지)	사회복지시설	신정동329-4	1,247.1	-	1,247.1	"	
기정	⑤	남부준법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	사회복지시설	신정동 330-11	3,353.8	-	3,353.8	"	
기정	⑥	어린이집, 여성교실	사회복지시설	신정동 330-13	1,580.7	-	1,580.7	"	
기정	⑦	청소년회관	사회복지시설	목동918	5,473.8	-	5,473.8	"	
기정	⑧	장애인 복지시설	사회복지시설	신정동319-13	1,987.0	-	1,987.0	"	
기정	⑨	-	사회복지시설	목동408-78	1,480.0	-	1,480.0	양천구고시 2005-51호 (92.10.17)	

■ 건축범위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마. 방재시설 : 변경없음

바. 보건위생시설 : 변경없음

사. 환경기초시설 : 변경없음

③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조서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2.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3. 건축물 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4. 건축물 배치·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5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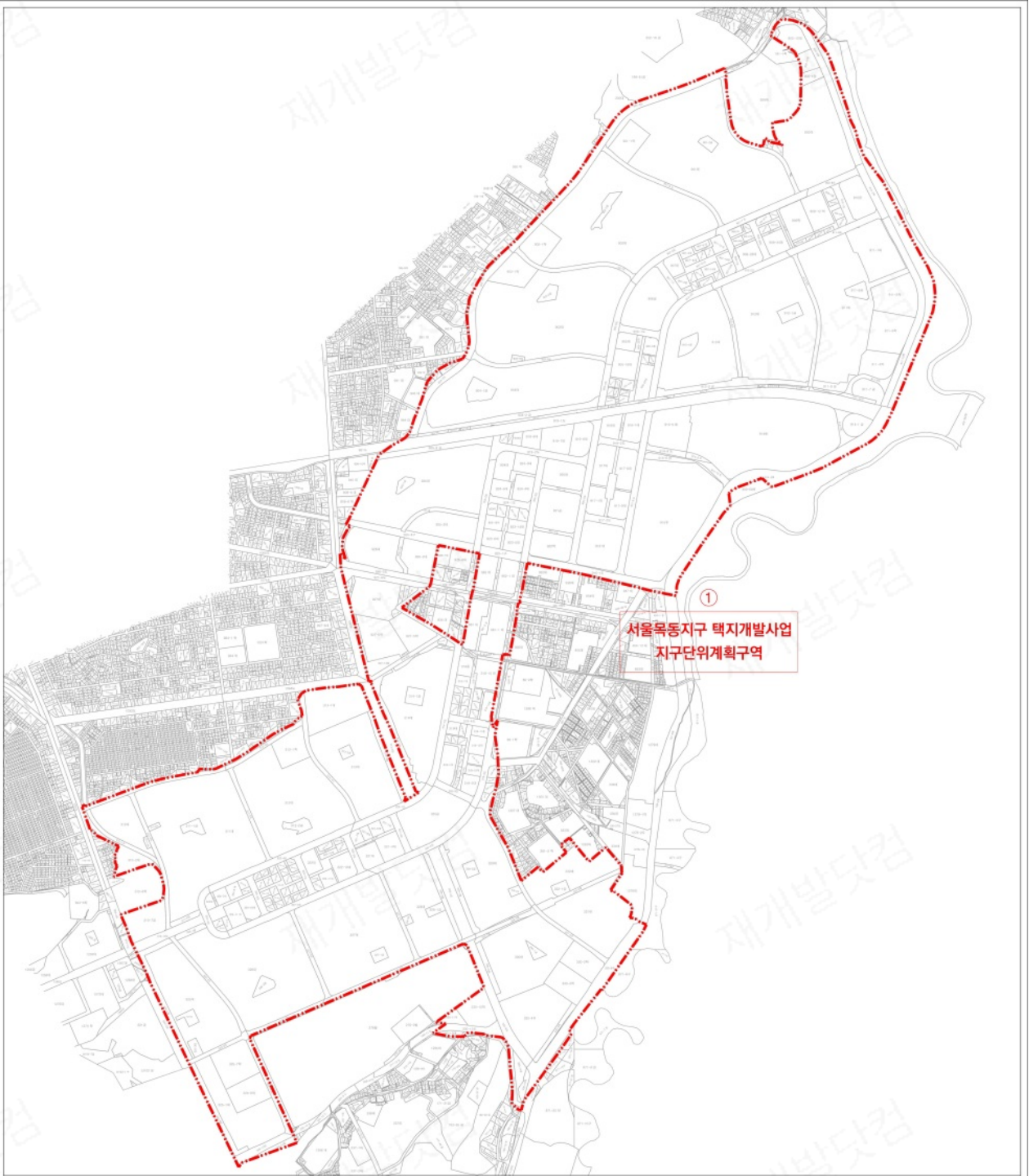
1.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2.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3.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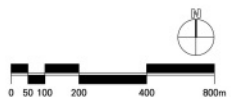
Ⅲ. 관계도면 : 불임참조

Ⅳ. 열람장소 : 양천구 도시계획과 (☎02-2620-3508)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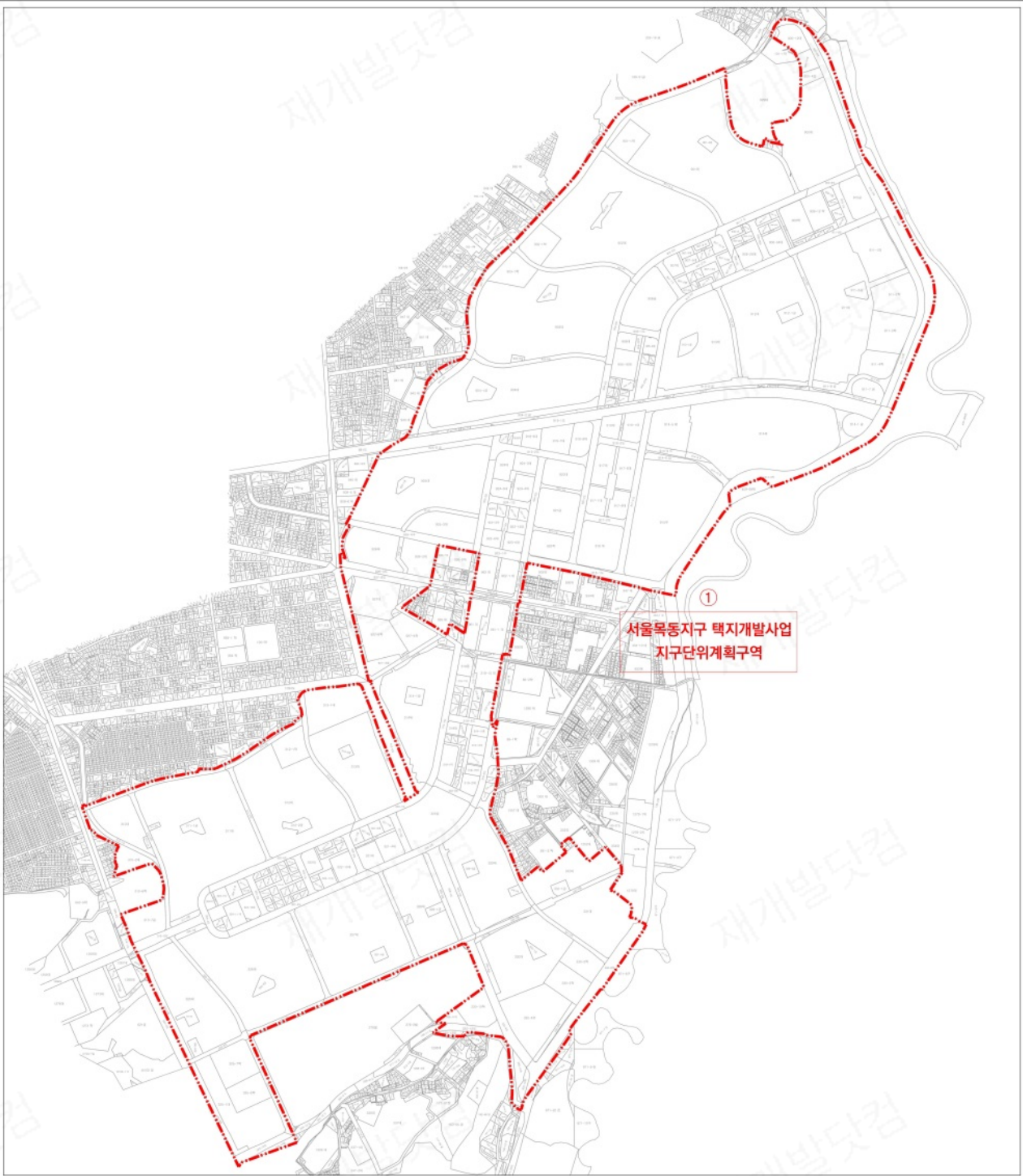
※ 고시문은 양천구청 홈페이지(www.yangcheon.go.kr)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
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기정)도



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	 지구단위계획구역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기정)도	

□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도



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	 지구단위계획구역계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도	 

□ 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

